

- (4) 나이스 처리 시 [아빠의달육아휴직유무]란에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의 경우 [3개월 이상]에 표시
- (5)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육아휴직 허가 시 같은 자녀에 대해 휴직여부 확인하고, 보고 시 비고란에 휴직여부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인 경우 비고란에 “3개월 이상”으로 표시하여 보고
- [예시]

소속	직위(급) (교과)	성명	발령일	발령사항	비고 (휴직동시여부)
OO중	중등학교 교사 (OO)	정OO (00.00.00)	20**.**.**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7호에 의거 휴직을 명함.(육아) 휴직기간:20**.**.**.-20**.**.**.	첫째 정OO (20**.**.**) (예 또는 아니오) 3개월 이상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함.
 -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 3)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이라 함)을 지급함.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 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함.
- 4)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함.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5) 4)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 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아. 출산휴가와의 관계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출산휴가는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